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237
----------	-----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5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의원

1. 제안이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나. 예산조치: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2024. 1. 10. ~ 2024. 1. 30. (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3. 12. 27. ~ 2024. 1. 8. (12일간),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가구당 1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마을의 규모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전원마을의 규모는 4가구 이상으로 한다.
2.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data-bbox="209 701 379 741"><신 설></p>	<p data-bbox="759 701 1414 741">제10조의2(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p> <p data-bbox="775 779 1414 1037">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가구당 1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마을의 규모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data-bbox="775 1055 1414 1312" style="list-style-type: none"><li data-bbox="775 1055 1414 1149">1. 소규모전원마을의 규모는 4가구 이상으로 한다.<li data-bbox="775 1167 1414 1312">2.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p data-bbox="775 1330 1414 147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관계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

[시행 2023. 9. 29.]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차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0조의2(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가구당 1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마을의 규모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전원마을의 규모는 4가구 이상으로 한다.
2.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연락처	(033) 330 - 2504